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범위

【질 문】

현행 민법상 가족의 개념과 범위는 어떠한가?

【응 답】

명 순 구/ 정구태

일상생활에서는 가족과 친족이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나 법률상으로는 양자가 다른 개념이다.

민법상의 가족이란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를 말한다. 민법상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호적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상의 가족은 동일호적 여부보다는 생계의 동일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민법상의 가족은 동일호적 여부에 의해서 성립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및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호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가족이 아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그 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되고, 그 외에도 기타 민법규정에 의해서 그 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79조). 여기에서 기타 민법규정에 의해서 그 家에 입적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夫의 동의를 얻어 입적한 夫의 혈족 아닌 妻의 직계비속(제784조: 가봉자입적), ② 호주가 입적하게 한 他家의 호주가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제785조), ③ 分家한 호주를 따라 입적한 가족(제791조), ④ 廢家하고 他家에 입적한 호주에 수반하여 입적한 가족(제795조)을 들 수 있다. 한편, 호주승계 등으로 인한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前戶主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新戶主의 가족이 된다(제780조).